

롯데손해보험 퇴직연금 이율보증보험 상품설명서

본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본 설명서를 통해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품의 약관 및 운용설명서를 통해 필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면, 추후 해당내용에 관한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 개요

상품 명	롯데손해보험 퇴직연금 이율보증형 보험 (원리금보장형)
가입 대상	퇴직연금 가입 기업 [DB] 또는 개인 [DC / IRP]
상품 개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는 자산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이율 보증형 상품으로서, 가입시점의 적용이율을 보증기간 종료시까지 확정 적용하는 상품
이율 적용	부담금 납입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보증형 적용이율. 롯데손해보험 홈페이지 (www.lotteins.co.kr) 에 매 월 공시
상품 구조	가입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상품에 부담금이 납입되는 부담금별로 ‘단위보험’이 설정되며, 계약자는 각 단위보험에 적용될 이율보증형 적용이율의 보증기간(이율보증기간)을 설정합니다. *이율보증기간 1/2/3/4/5 년 납입된 부담금은 단위보험별로 각 단위보험을 설정한 날의 이율보증형 적용이율로 이율보증기간의 만기일까지 ‘부담금 적립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부리/적립되며 만기일에 해당 단위보험의 적립금으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거나 새로운 단위보험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이자(수익)지급시기	만기 일시지급식 :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이자 지급
재예치 가능 여부	[DB] 만기일에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재예치되며 재예치 시점 이율 적용 [DC / IRP]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만기상환 후 지정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전환. 지정된 상품이 없을 경우 대기성자금으로 전환 (변경 소요기간 개인별 / 만기별 상이) 포트폴리오 內 편입 이율보증형은 재예치 대상. (자주묻는질문 / 디폴트옵션 편입 참고)

2. 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사항

예금자보호 여부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DC/IRP] 다른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원리금보장상품 (이율보증형보험)에 대하여 1 인당 최고 5,000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동일한 금융기관별로 합산하여 1 인당/상품당 최고 5,000 만원 까지 보호하며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개이상 금융기관에 가입 한 경우 합산하여 5,000 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의 경우 편입된 이율보증형보험에 대해서만 예금자보호가 되며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원리금보장 및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급사유 발생 시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지급기일) 이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 내에 급여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11 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p>금융소비자 권리보호 안내사항</p>	<p>「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위법 계약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님께 해당 해지 요구에 대한 수락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 하여야 합니다.</p>
<p>민원/분쟁 발생 시</p>	<p>자세한 상품문의 또는 상품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www.lotteins.co.kr),또는 고객센터(1599-8830)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발생 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청약철회가능한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위법계약을 체결 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p>

3. 이율보증형 중도해지이율 (만기 전 해지)

<p>이율보증형 I 중도해지이율</p>	<p>구 분</p>	<p>계약해지시점</p>	<p>중도해지이율</p>
	<p>이율보증형(1년)</p>	<p>11개월미만</p>	<p>적용이율 × 90%</p>
	<p>이율보증형(2년)</p>	<p>11개월이상~1년미만</p>	<p>적용이율</p>
	<p>이율보증형 (3년) 롯데손해보험 디폴트옵션 초저위험</p>	<p>1년미만</p>	<p>적용이율 × 85%</p>
	<p>이율보증형(4년)</p>	<p>1년이상~1년11개월미만</p>	<p>적용이율 × 95%</p>
	<p>이율보증형(5년)</p>	<p>1년11개월이상~2년미만</p>	<p>적용이율</p>
	<p>이율보증형(5년)</p>	<p>1년미만</p>	<p>적용이율 × 75%</p>
	<p>이율보증형(5년)</p>	<p>1년이상~2년미만</p>	<p>적용이율 × 85%</p>
	<p>이율보증형(5년)</p>	<p>2년이상~2년11개월미만</p>	<p>적용이율 × 95%</p>
	<p>이율보증형(5년)</p>	<p>2년11개월이상~3년미만</p>	<p>적용이율</p>
	<p>이율보증형(5년)</p>	<p>1년미만</p>	<p>적용이율 × 65%</p>
	<p>이율보증형(5년)</p>	<p>1년이상 ~ 2년미만</p>	<p>적용이율 × 75%</p>
	<p>이율보증형(5년)</p>	<p>2년이상 ~ 3년미만</p>	<p>적용이율 × 85%</p>
	<p>이율보증형(5년)</p>	<p>3년이상~3년11개월미만</p>	<p>적용이율 × 95%</p>
	<p>이율보증형(5년)</p>	<p>3년11개월이상~4년미만</p>	<p>적용이율</p>
	<p>이율보증형(5년)</p>	<p>1년미만</p>	<p>적용이율 × 55%</p>
	<p>이율보증형(5년)</p>	<p>1년이상 ~ 2년미만</p>	<p>적용이율 × 65%</p>
	<p>이율보증형(5년)</p>	<p>2년이상 ~ 3년미만</p>	<p>적용이율 × 75%</p>
	<p>이율보증형(5년)</p>	<p>3년이상 ~ 4년미만</p>	<p>적용이율 × 85%</p>
	<p>이율보증형(5년)</p>	<p>4년이상~4년11개월미만</p>	<p>적용이율 × 95%</p>
<p>이율보증형(5년)</p>	<p>4년11개월이상~5년미만</p>	<p>적용이율</p>	

이율보증형 II 중도해지이율	구 분	계약해지시점	중도해지이율
	이율보증형 II (3년)	1년미만	적용이율 × 65%
		1년이상~2년미만	적용이율 × 75%
		2년이상~3년미만	적용이율 × 85%
	이율보증형 II (4년)	1년미만	적용이율 × 55%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 × 65%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 × 75%
	이율보증형 II (5년)	3년이상~4년미만	적용이율 × 85%
		1년미만	적용이율 × 45%
		1년이상 ~ 2년미만	적용이율 × 55%
		2년이상 ~ 3년미만	적용이율 × 65%
	이율보증형 II (5년)	3년이상 ~ 4년미만	적용이율 × 75%
		4년이상~5년미만	적용이율 × 85%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한 경우 가입자가 퇴직 한 경우 수수료를 납입하기 위하여 적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경우 회사내의 다른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내의 다른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자주 묻는 질문 (민원,분쟁,상담이 많은 사항)

중도해지	Q: A 고객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인 이율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이후 타금융기관으로 계약을 이전하였는데, 이전시점에 사전 안내받은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됨에 이의를 제기 A: 원리금 보장 상품인 이율보증형보험의 경우 사전에 공시되어있는 금리는 만기까지 유지했을 때 적용되는 이율이며 만기 이전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계약 해지 시 중도해지 이율 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기 전에 다른 상품으로 교체할 경우에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Q: B 고객은 이율보증형보험 상품에 가입함. 이후 만기일 도래 전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교체하였는데, 교체시점까지의 이자가 줄어들어 해당시점 적립금평가금액보다 작아짐에 이의 제기 A: 중간에 상품을 교체 시 기존의 이율보증형보험의 만기 전에 교체 할 경우, 해당상품은 중도해지되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 됨.
디플트옵션 편입	Q: 디플트옵션 포트폴리오로 운용 시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포트폴리오 내 상품은 가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반복하여 자동 재 예치 됩니다. 일반 DC/IRP 상품의 경우 2023.7.12 일 이후 자동 재예치가 폐지되어 지정된 디플트옵션 상품으로 운용되거나, 대기성자금으로 전환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퇴직연금 운용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